
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28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6.

발 의 자 : 한정애 · 조인철 · 권향엽
한준호 · 허 영 · 강준현
송옥주 · 김영배 · 김 윤
염태영 · 김주영 · 김남근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‘25년 강릉 가뭄 재난사태 선포 등 극한 가뭄으로 산업 및 생활용수 제한 등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산업용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, 총인구 감소, 쌀 경지면적 감소 등으로 생활 및 농업용수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음. 그러나 현행 5년 단위의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는 급변하는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.

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발사업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개발구역 내에서 수도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, 현행 수도법 체계에서는 전용수도사업 인가를 받은 경우와 급수 설비를 제외하고는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가 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. 또한, 수도시설 인근에서 수도공사 이외의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수도시설 매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비함. 이로

인하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한 수도시설에서의 수질사고, 수도공사
사가 아닌 굴착공사 중 상수관로 손괴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.

2019년 인천 적수 사고 이후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확보
하기 위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. 상수
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인력·장비 등 요건과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
가 있으며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이를
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. 그
러나 현행 수도법 체계에서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부적격자에 대
한 기준과 점검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비함.

현행 수도법 체계에서는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의 설치비용을 수
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면,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
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
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.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
발사업 관련 개별 법령에서는 정비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
하고 있음. 대법원 판례에서도 수도법과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내 수
도시설의 신설·증설 등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
보아야 하며,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는
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한다고 법
리를 해석한 바 있음. 이에 수도법 체계에서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에
대한 부담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

설의 신·증설을 유발하는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현 수도법 체계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도사업자와 개발사업 시행자 간 소송이 다수 발생하는 등 그동안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수도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기가 지속되었음. 그리고 현행 수도법 체계는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·증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장래에 수도시설의 신설·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하여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,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 등 개발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조성된 택지에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그동안의 소송 판례를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,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개선하여 기후위기, 인구·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물 수급 여건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고, 수도사업자의 수도 설치비용 부담의 범위,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한편, 수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에 대한 허가 절차와 굴착공사 전 수도시설의 매설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협의절차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,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를 법령에 명시하여 부적격 사업자를 사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업

무의 적정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(안 제4조).

나.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는 수도사업자의 허가를 받아 수도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 시 처벌규정을 마련함(안 제17조의2 및 제87조).

다. 수도시설 공사 이외의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수도시설의 매설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수도사업자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처벌규정을 마련함(안 제20조의2, 제83조 및 제84조).

라.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결격사유를 명문화하여 부적격자의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.(안 제21조의5, 제66조 및 제87조).

마.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대행업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실효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함.(안 제66조 및 제87조).

바. 수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도 설치비용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 설치비용의 부담주체를 명확히 함(안 제70조).

사. 주택단지·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 시설의 신설·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하여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,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·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며, 지방자치단체별 원인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71조).
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수요 전망, 공급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.

제5조제7항제2호 중 “사항”을 “사항(수돗물의 수요 전망은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따른다)”으로 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 시행 등) ①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는 수도공사(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인가받은 전용수도 및 급수설비는 제외한다)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된 사항을 변경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

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

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)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)는 제1항에 따라 허가된 공사의 진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시설 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완공 시 수질검사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8조제3항 본문 중 “제3조제24호”를 “제3조제26호”로 한다.

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수도시설 매설상황 확인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(이하 “굴착공사자”라 한다)는 해당 토지의 지하에 수도시설이 매설되어 있는지 여부를 수도사업자에게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시설의 매설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여 굴착공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, 수도시설이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, 굴착공사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수도시설 매설 위치의 표시

2. 수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 굴착공사로 인

한 사고 예방 조치사항

④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, 매설된 수도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, 제3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굴착공사자는 수도사업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까지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1조의5를 제21조의6으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21조의5)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,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5(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등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이 법, 「하수도법」, 「먹는물관리법」 또는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4. 이 법, 「하수도법」, 「먹는물관리법」 또는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5.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. 임원 중에 제 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제3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“일반수도사업자”를 각각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제33조의2제1항 중 “일반수도업자”를 “일반수도사업자”로 한다.

제50조 중 “제20조”를 “제20조, 제20조의2”로 한다.

제66조제1항 중 “인가관청”을 “인가관청, 지방환경관서의 장”으로, “포함한다), 수질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”를 “포함한다) 및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,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 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 등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”로, “수도시설에 출입하여 관계”를 “수도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”로, “검사하게 하거나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”를 “검사하게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수도사업자
2. 전용수도의 설치자
3.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

제70조 중 “수도사업자”를 “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도사업자”로 한다.

제71조제1항 중 “설치하여”를 “설치하여 해당 수도시설 또는 장래”로, “증설 등”을 “증설”로, “자를”을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를”로 한다.

제78조제1항 중 “시·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”을 “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”로 한다.

제83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20조의2(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

제84조제1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의2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20조의2제1항(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수도시설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도사업자의 굴착공사 개시 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

제8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공사를 시행한 자

제87조제4항제9호 중 “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”를 “다음

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”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수도사업자
- 나. 전용수도의 설치자
- 다.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가수도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6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최초 국가수도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는 2030년으로 한다.

제3조(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 시행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2의 신설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공사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) 제7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인행위(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말한다)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5조(벌칙·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·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제1호 중 “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”을 “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,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”으로 한다.

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제1항제9호 중 “인가 및”을 “인가,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및”으로 한다.

③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제16호 중 “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”을 “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,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”으로 한다.

④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제22호 중 “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”을 “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,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”으로 한다.

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28호 중 “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수도

사업 및”을 “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, 같은 법 제17조의 2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⑥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제15호 중 “인가, 같은 법 제49조”를 “인가,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49조”로 한다.

⑦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4호 중 “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과”를 “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,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⑧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2호 중 “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”을 “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,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1조제1항제2호 중 “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”을 “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,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수도사

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”으로 한다.

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제9호 중 “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”을 “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,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⑪ 어촌·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호 중 “인가 또는”을 “인가,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또는”으로 한다.

⑫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8조제1항제18호 중 “인가, 같은 법 제49조”를 “인가,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49조”로 한다.

⑬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 중 “인가, 같은 법 제49조”를 “인가,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49조”로 한다.

⑭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1항제16호 중 “인가,”를 “인가,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

른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 시행의 허가,”로 한다.

⑮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21호 중 “인가,”를 “인가,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 시행의 허가,”로 한다.

⑯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10호 중 “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”을 “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,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제19호 중 “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”을 “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,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⑱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제1항제2호 중 “인가 및”을 “인가,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및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)</p> <p>① ~ ⑤ (생략)</p> <p>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.</p> <p>⑦ (생략)</p> <p>제5조(수도정비계획의 수립) ① ~ ⑥ (생략)</p> <p>⑦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</p> <p>3. ~ 15. (생략)</p> <p>⑧ 삭제</p> <p>⑨·⑩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4조(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)</p> <p>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수요 전망, 공급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수도정비계획의 수립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사항(수돗물의 수요 전망은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따른다)</u></p> <p>3. ~ 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⑨·⑩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의2(수도사업자가 아닌 자</p>

의 수도공사 시행 등) ① 수도 사업자가 아닌 자는 수도공사 (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인가받은 전용수도 및 급수설비는 제외한다)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된 사항을 변경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)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)는 제1항에 따라 허가된 공사의 진행 상황을 감독할

설되어 있는지 여부를 수도사업자에게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시설의 매설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여 굴착공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, 수도시설이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, 굴착공사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수도시설 매설 위치의 표시
2. 수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 예방 조치 사항

④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, 매설된 수도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, 제3

<신 설>

항에 따른 조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굴착공사자는 수도사업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까지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1조의5(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등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이 법, 「하수도법」, 「먹는물관리법」 또는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	<p>4. 이 법, 「하수도법」, 「먹는물관리법」 또는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</p> <p>5.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p> <p>6. 임원 중에 제 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</p>
<p><u>제21조의5(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) ① (생략)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<u>제21조의6(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②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
<p>제33조(위생상의 조치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</p>	<p>제33조(위생상의 조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

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(이하 “정수장 위생안전 인증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~ ⑦ (생략)

제50조(준용 규정)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·제5항, 제18조, 제20조, 제21조제1항·제6항, 제23조 및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6조(보고의 요구 등) ① 인가 관청은 수도의 시설 기준(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기준을 포함한다), 수질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도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·시설·기자재 및 수질을 검사하게 하거나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

----- 일반수도사업자 -----

-----.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50조(준용 규정) -----

----- 제20조, 제20조의2 -----

-----.

제66조(보고의 요구 등) ① 인가 관청, 지방환경관서의 장 -----
----- 포함한다) 및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,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 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요건 및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 등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고하거나

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(생략)

제70조(수도 설치비용의 부담) 수도(급수설비는 제외한다)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.

제71조(원인자부담금)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(주택단지·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)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·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--- 수도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--- 검사하게 ----.

1. 수도사업자

2. 전용수도의 설치자

3.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0조(수도 설치비용의 부담) -

-----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도사업자---

제71조(원인자부담금) ①-----

----- 설치하여 해당 수도시설 또는 장래 ----- 증설----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-

-----.

②·③ (생략)

제78조(권한의 위임과 위탁) ①

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
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
시·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
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8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
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
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5. ~ 11. (생략)

제8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
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신설>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78조(권한의 위임과 위탁) ①

----- 그 소
속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3조(벌칙)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4의2. 제20조의2(제50조에 따라
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
위반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
자

5. ~ 11. (현행과 같음)

제84조(벌칙) -----

-----.

1. 제20조의2제1항(제50조에 따
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
다)을 위반하여 수도시설 매
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
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

1. · 1의2. · 2. (생략)

4. (생략)

제87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② · ③ (생략)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8. (생략)

9.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

<신설>

에 따른 수도사업자의 굴착공사 개시 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

3. ~ 5. (현행 제1호, 제1의2호, 제2호와 같음)

7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제87조(과태료) ① 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공사를 시행한 자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-----

----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가. 수도사업자

<신 설>

<신 설>

⑤ (생 략)

나. 전용수도의 설치자

다.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

⑤ (현행과 같음)